

인천지방법원 2017. 11. 16 선고 2017가단11086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7. 11. 16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/4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92. 7. 21. 접수 제765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각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조동은

별지